

대학출판부 운영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07
제정일자	1998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2

1998.03.01.제정 2014.02.01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교무처

제1조(목적)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.) 소비조합 출판부는 학내 제 간행물의 발향과 보급을 통해 학술 연구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대학문화의 창달과 학풍조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설치) 출판부는 소비조합 내에 둔다.

- 제3조(사업) 출판부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은 학내 인쇄물 및 학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 서와 교재발간에 중점을 두고, 다음 각 항목의 사업을 한다.
 - 1) 본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개발 및 간행
 - 2) 전공교재의 기획 및 편찬
 - 3) 학술도서의 편찬 및 간행
 - 4) 학술회의 자료 및 연구논문집 편찬 및 간행
 - 5) 기타 대학에서 발생되는 각종 인쇄물 및 간행물
 - 6) 발간도서의 홍보, 전시, 보급, 판매
- 제4조(편집위원회) 출판부 출판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를 둔다.
 - 1)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
- 2)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, 위원은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0.09.25>
 - 3) 위원회의 업무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.
- 제5조(편집위원회의 기능)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- 1) 연간 출판계획의 수립
 - 2) 제3호의 각호에 관한 사항
 - 3) 출판부의 예산 및 결산
 - 4) 기타 출판부 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항
- 제6조(회의)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 - 1) 정기회의는 매년 2월중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.
 - 2)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소집한다.
 - 3) 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

대학출판부 운영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07
제정일자	1998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2

4) 제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교무처에 3년간 보관한다. <개정 2020.09.25>

제7조(예산) 출판부의 예산은 소비조합 운영비와 출판기금,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 한다.

제8조(회계년도) 본 출판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.

제9조(예결산 및 사업보고) 편집위원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전년도 결산보고 서와 다음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소비조합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기타사항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산학처』에서 『교학처』로 이관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